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29일, 김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9. 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 9.16.)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9.22.)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현의원)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현행 실증특례 지정 절차는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음. 특히 기술개발 및 시장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이러한 심의기간이 기업의 시제품 제작, 현장실증 및 사업화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경우'까지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유사사례가 없는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규제특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기술의 시제품 제작·실증·사업화 간 연계를 촉진하고,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 등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특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증·신고 등의 요건이나 일반적인 안전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실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을 규제가 없거나 신속한 실증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기술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안전성·환경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회색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술’과 ‘신속한 실증이 가능한 기술’을 동일하게 보지 않도록 별도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패스트트랙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안전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개정안은 실증특례 지정의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간소화 대상에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심의·의결 사항이 확대되었으므로 구성을 임의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고려사항 준용하도록 수정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전문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심의·의결 사항이 확대되었으므로 구성을 임의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고려사항 준용하도록 수정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의2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실증특례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신속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공항·항만에 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생략)	제19조(공항·항만에 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9조(공항·항만에 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 원회) ①~⑥(생략)	제7조(연구개발특구위 원회)(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 원회) ①~⑥(생략)
⑦ 제1항제6호의2 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⑦ ----- ----- ----- ----- ----- ----- ----- <u>두어야 한다.</u>
제16조의2(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 ① ~ ⑥ (생략)	제16조의2(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의 내 용이 종전에 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u>	⑦ <u>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의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제3 항, 제5항 및 제6항</u>	⑦ <u>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신청의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제3 항, 제5항 및 제6항</u>

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
스·제품의 내용·
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경우
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
다)에서 심의·의
결할 수 있다.

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
7항에 따른 전문위
원회(이하 “전문위
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
7항에 따른 전문위
원회(이하 “전문위
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문위원회는 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청 내용이 종
전에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
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
품의 내용·방식·
형태 등과 실질적
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u>2. 제16조의6제4항</u> <u>에 따른 규제의 신</u> <u>속확인 결과 신청</u> <u>내용에 대한 허가</u> <u>등이 법령에 따라</u> <u>금지되지 않는 경</u> <u>우</u> ⑧ ~ 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2. (개정안과 같음)</u> ⑧ ~ ⑰ (현행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u> 이 법 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실증특례 간소</u> <u>화에 관한 적용례)</u> <u>제16조의2제7항 제</u> <u>2호는 이 법 시행</u> <u>이후 신속확인을</u> <u>요청하는 경우부터</u> <u>적용한다.</u>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청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특례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신속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 ⑥ (생 략)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 ⑥ (생 략)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 ----- ----- ----- ----- 두어야 한다.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생 략)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 · 제품의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u>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u>

⑧ ~ ⑰ (생략)	<u>1. 신청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u> <u>2.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규제</u> <u>의 신속확인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허가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u> ⑧ ~ ⑰ (현행과 같음)
-------------------	--